

평촌교회 정관개정(안) 신구대조표

구 정관 전 문	신 개정안	개정취지/참고사항
<p>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신앙고백서”에 수록된 신앙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수용하고 특히 다음과 같은 고백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 있어 중점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성도들의 결의에 따라 정관을 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표준인 것을 믿는다. 2.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인격적 존재로 지음 받은 것을 믿는다. 3. 우리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 되심을 믿는다. 4. 우리는 성례(세례와 성찬)를 진실한 마음의 참회고백 심정으로 참여하여, 신성한 교회 의식으로 준수한다. 5. 우리는 성수주일, 헌금생활, 전도생활 및 봉사활동 등을 책임있는 교인의 의무로 믿는다. 6. 우리는 교회의 제반 기능과 역할중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국내외 선교의 중요성에 우선을 둔다. 		
제 1 장 총 칙		

<p>제1조 (목적)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로서 신·구약 성경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헌법 제7장 교회에 대한 교리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요리 문답서 및 12신조를 바탕으로 <u>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u>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 실현하고, 어린이 집, 경로대학, 독서실, 학원 등 교육서비스사업 실시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섬김의 가르침을 본받아 지역사회에 대한 섬김의 실천과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여 궁극적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11.4.3.개정)</p> <p>제2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 평촌교회라 칭한다.</p> <p>제3조 (소재지) 교회의 주된 소재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34-1외 4필지에 둔다.(11.4.3.개정)</p>	<p>제1조 (목적)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로서 신·구약 성경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헌법 제7장 교회에 대한 교리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요리 문답서 및 12신조를 바탕으로 <u>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u>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 실현하고, 어린이 집, 경로대학, 독서실, 학원 등 교육서비스사업 실시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섬김의 가르침을 본받아 지역사회에 대한 섬김의 실천과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여 궁극적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 (소재지) 교회의 주된 소재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90외 9개 필지에 둔다.</p>	<p>웨스터민스터 → 웨스트민스터</p> <p>도로명주소로 변경(건물2개동, 10개필지 목록 별첨)</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목표와 사명</p> <p>제4조 (목표) 본 교회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마 22:36-40, 28:19-20)는 다음과 같다.</p> <p>① 전도(지역교회) - “가서 제자 삼으라”</p> <p>② 예배(출석교인) -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p> <p>③ 교제(등록교인) - “세례를 주라”</p> <p>④ 교육(성숙한 성도) - “가르쳐 지키게 하라”</p> <p>⑤ 사역(사역자) -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목표와 사명</p> <p>제4조 (목표) 본 교회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마 22:36-40, 28:19-20)는 다음과 같다.</p> <p>① 예배(출석교인) -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p> <p>② 선교(지역교회/해외) - “가서 제자 삼으라”</p> <p>③ 교육(성숙한 성도) - “가르쳐 지키게 하라”</p> <p>④ 봉사(사역봉사자) -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p>	<p>제1조 목적의 순서에 따라 목표의 순서를 새로 정리함</p>

<p>라”</p> <p>제5조 (사명) 평촌교회 내 모든 성도들은 복음적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가정과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평신도 사역자로 훈련되어 나가고자 한다.</p>	<p>⑤ 성도의 교제(등록교인) - “세례를 주라”</p>	
<p style="text-align: center;">3 장 교인 및 직원</p> <p>제6조 (교인) 본 교회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본 교회의 교적부에 등록된 자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3 장 교인 및 직원</p> <p>제6조 (교인) 본 교회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본 교회의 교적부에 등록된 자로 한다. 단, 등록시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하여 교적부에 등록한다.</p>	<p>교적부 등록일에 대한 객관적 확정기준을 정립하여 선거, 임직 등과 관련 논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교적부 등재하기로 함</p> <p>※ 새신자등록시 주민등록의 내용으로 기재하도록 새신자카드를 제작함</p>
<p>제7조 (직원의 구분) 직원은 향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p> <p>① 향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만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단 치리만 하는 장로는 65세까지 시무하고 은퇴한다.</p>	<p>제7조 (직원의 구분) 직원은 향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p> <p>① 향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만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단, 치리만 하는 장로는 만65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시무하고 은퇴한다.</p>	<p>향존직 은퇴 시점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정부의 원칙에 따라서 “만”나기로 명확히 정함</p>
<p>② 장로는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p> <p>③ 임시직은 전도사와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 기간은 1년이요. 연임할 수 있다.</p>	<p>② 장로중에서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p> <p>③ 임시직은 전도사와 집사이며, 그 시무 기간은 1년이요 연임할 수 있다.</p>	<p>서리집사 → 집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조 직</p> <p>제8조 (원칙) 본 교회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조 직</p>	

<p>설립된 비영리 종교 단체이며,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총회(노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본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본 교회 정관과 운영 규정을 따른다.</p>		
<p>제9조 (공동의회) 공동의회의 직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제13장 제88조에 따르며, 그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⑤ 기타 공동의회의 직무는 본 정관의 다른 규정과 본 정관의 위임에 의한 운영규정에 의한다. 	<p>제9조 (공동의회) 공동의회의 직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편 제13장 제90조에 따르며, 그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⑤ 정관개정 및 기본재산 처분 	<p>구정관 ⑤항은 현재 운영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기본재산 처분 및 정관 개정 내용 직무 삽입</p> <p>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조항 제90조 5.호 공동의회결의 사항을 그대로 ①항부터 ④항까지 그대로 준용하되, 정관개정과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동의회결의로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함</p>
<p>제10조 (제직회) 제직회의 직무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제13장 제89조에 따르며, 그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②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③ 구제비와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④ 기타 중요 사항 ⑤ 기타 제직회의 직무는 본 정관의 다른 규정과 본 정관의 위임에 의한 운영규정에 의한다. 	<p>제10조 (제직회) 제직회의 직무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편 제13장 제91조에 따르며, 그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②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③ 구제비와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④ 당회가 요청한 사항 ⑤ 기본재산을 제외한 부동산매매 	<p>민법 기타 법인 관련 법리상 교회는 총유 개념이며, 교회재산의 처분권은 반드시 재산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 있는 것이며, 교회정관 개정은 교인 총회인 공동의회에서만 가능한 것이 당연한 법리이므로 이 부분을 명백히 하기위해 공동의회 권한에 포함시킨 것임</p>
<p>제11조 (당회) 당회의 직무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제10장 67조에 따르며, 그 직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제11조 (당회) 당회의 직무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편 제10장 68조에 따르며, 그 직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①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p>	<p>①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p>	
<p>② 당회는 교인의 이명증서(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p>	<p>②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아동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p>	<p>아동세례 삽입</p> <p>총회헌법에는 아래와 같이 “아동세례”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관에 아동세례를 포함시킴(2021.11.29.개정)</p> <p>아직은 총회헌법은 개정되어 있지 않음</p>
<p>③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p> <p>④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p> <p>⑤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하게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p> <p>⑥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건을 제출한다.</p> <p>⑦ 당회는 범죄한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p> <p>⑧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 및 동산(차량포함)을 관리한다.</p> <p>⑨ 기타 당회의 직무는 본 정관의 다른 규정과 본 정관의 위임에 의한 운영규정에 의한다.</p>	<p>③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p> <p>④ 당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한다.</p> <p>⑤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p> <p>⑥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p> <p>⑦ 당회는 범죄한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이때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⑧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차량포함)을 관리한다.</p>	<p>총회헌법 권징 조항 1.2조의 정의 부분을 당회 직무에 삽입</p>

	<p>⑨ 기타(제직회나 공동의회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재 정</p> <p>제12조 (재정의 원칙) 본 교회의 기본 재산은 부동산 및 동산(차량포함), 현금 및 현물 등으로 하고 그 관리 및 처분 등에 대해서는 회계 관리 규정을 별도로 제정 운용한다.</p> <p>제13조 (부동산 관리) ① 모든 부동산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평촌교회 명의로 등기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부동산의 처분이나 취득은 당회 의결 후 제직회 결의를 거쳐 행한다. 다만 기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당회의 의결로 시행한 후 제직회에 사후 보고한다.</p> <p>③ 대표자 선임 결의는 당회의 의결로 정한다</p> <p>제14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규 정 등</p> <p>제15조 (운영규정) 본 교회의 사역 목적 달성에 요구되는 행정,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운영 규정 및 운영 세칙을 둔다.</p> <p>제16조 (회계규정) 본 교회의 사역 목적 달성에 요구되는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감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 규정을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규 정 등</p> <p>제15조 (운영규정) 본 교회의 사역 목적 달성에 요구되는 행정,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고, 운영세칙을 둘 수 있다.</p> <p>제16조 (회계규정) 본 교회의 사역 목적 달성에</p>	<p>현재, 평촌교회에는 운영규정 및 회계규정, 인사규정은 당회와 공동의회의 명확한 제정절차 결의없이 규정되고 있는 바, 금번에 신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명기하였고, 선거관리규정도 금번에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함</p>

<p>제17조 (인사규정) 본 교회의 사역 목적 달성에 요구되는 교회 직원의 청빙, 임면, 채용, 선거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인사 규정을 둔다.</p>	<p>요구되는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감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p> <p>제17조 (인사규정) 본 교회의 사역 목적 달성에 요구되는 교회 직원의 청빙, 임면, 채용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인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p> <p>제18조 (선거관리규정) 본 교회의 사역 목적 달성에 요구되는 교회 향존직의 선거 등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p> <p>제19조 (규정제정 및 개정) ① 당회는 재적 당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p> <p>② 제직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여 당회에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③ 공동의회는 제22조에 정한 요건에 따라 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결의를 한다.</p>	<p>규정의 제.개정의 결의권한이 공동의회에 있음을 명확히 함</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장 서류의 열람 등</p> <p>제20조 (서류의 열람 및 등사) ① 공동의회 회원인 18세이상 세례교인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채택이 완료된 교회의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 회의록과 회의시 보고된 회계자료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당회는 제1항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p>	<p>총회 규칙 및 행정 제규정 총회 회의록 작성법 및 보존법 3. 당회록은 노회록, 총회록에 준하여 작성한다. 9. 회록 채택은 폐회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3년 9월 12일 개정(제98회 총회) / 회의록 작성법 및 보존법과 당회록 작성법을 통합함</p>

	<p>③ 제1항의 열람 및 등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전 회의자료 및 총회록은 통계자료 등은 누구에게나 인터넷 공개 열람되며, 규칙 해석은 인터넷 열람되고 총회록 등은 직접 방문 또는 회원으로 접근하여 열람 가능함</p> <p>당회록은 채택되면 보존되고, 공동의회 회원이 열람 접근 가능하여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장 정 관 개 정</p> <p>제18조 (정관수정) ① 당회는 당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 개정안을 발의한 후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p> <p>② 제직회는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 개정안을 발의하여 당회에 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때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정 관 개 정</p> <p>제21조 (정관 개정 발의) ① 당회는 재적 당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p> <p>② 제직회는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 개정안을 발의하여 당회에 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③ 공동의회는 제22조에 정한 요건에 따라 정관 규정 개정안에 대한 결의를 한다.</p>	<p>정관 개정의 절차를 구정관 출석한 대로 결의하는 요건이 다른 교회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 판례에 의거 부당하다고 판시된 사례를 근거로 개정 절차를 명확히 함</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보 칙</p> <p>제19조 (총회 헌법 규정의 준용)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9 장 보 칙</p> <p>제22조 (총회 헌법 규정의 준용)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과 시행규정 등에 의한다.</p> <p>제23조 (결의 요건) ① 일반적인 공동의회는 회원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p>	<p>정관 개정의 절차 등 교회 주요한 사안의 결의 절차를 구정관 출석한 대로 결의하는 요건이 판례에 의거 부당하다고 판시된 사례를 근거로 일부 소수에 의해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본 정관은 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정하고 2005.1.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본 정관은 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고 2011.4.4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정관에 명시된 제15조 부터 제18조의 규정 제.개정에 대한 결의는 회원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p> <p>③ 다음 각호의 특별결의사항에 대한 공동의회는 만18세 이상의 전년도 평균 출석교인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결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개정 2. 교회 부동산중 기본재산 처분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본 정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p>	<p>되는 것을 예방하며, 교회 공동의회 회원 의견이 좀 더 명확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일반결의 요건과 정관개정 등 주요사안의 개정 요건을 구분하여 결의 요건을 정함 서울고법 2014라93 결정 참조</p> <p>기본재산 목록은 교회명의 등기 부동산으로만 기재하는 것으로 확정하여 별첨함</p>
---	---	--

■ 평촌교회 기본재산 목록

N0	구분	지적	동명	지번/동호	면적(㎡)	면적(평)	취득일자	취득가(백만)	비 고
1	본당	건물	평촌동	134-1외2	7,054.5	2,134.0	2000-12-31	신축	
2		토지	평촌동	134-1	5,109.5	1,545.6	1969-12-02	2,726.0	
3		토지	내손동	600	1,045.0	316.1	1996-12-02	1,256.5	
4		토지	내손동	407-2	360.0	108.9	1995-04-28	144.8	
5		도로	평촌동	134-5	25.0	7.6	1979-08-13		
6		도로	평촌동	134-17		0.0			
7		도로	평촌동	136-29	8.0	2.4	1988-06-27		
8		도로	평촌동	136-27	32.0	9.7	1988-06-27	증여(5인)	
9	문화센터	건물	평촌동	136-1	13,510.5	4,086.9	2011-01-14	신축	
10		토지	평촌동	136-1	2,108.4	637.8	2008-05-29	12,250.0	
11		토지	평촌동	136-9	37.0	11.2	2009-04-16	162.0	
12		도로	평촌동	136-45	24.6	7.4	2011-02-25	분할	
합 계									